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613호 2023. 12. 14.(목)

조 례

고성군	조례	제2850호	고성군의	회 지방공	무원 복무	조례 전	부개정조리	례	2
고성군	조례	제2851호	고성군의	회 의원 원	우리강령 및	행동가	경 조례 역	일부개정	조례 ‥ 11
고성군	조례	제2852호	고성군 역	인구증가 서]책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	-례	14
고성군	조례	제2853호	고성군 1	반 설치 조	례 일부개기	정조례 …	•••••	•••••	22
고성군	조례	제2854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기	정조례 …		34
고성군	조례	제2855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	보치 조례 3	조례 일부	·개정조례		36
고성군	조례	제2856호	고성군	국가보훈다	상자 등 여	계우 및 기	지원에 괸	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	•••••	•••••			•••••	····· 40
고성군	조례	제2857호	고성군 기	지역아동센터	러 운영 및	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42
고성군	조례	제2858호	고성군 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기	정조례 …	 46
고성군	조례	제2859호	고성군	재단법인 7	병남고성공-	룡세계엑.	스포조직:	위원회 설	립립 및 지
		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	••••••	••••••	 52
고성군	조례	제2860호	고성군	자율방역단	운영지원	조례	•••••	•••••	····· 55
고성군	조례	제2861호	고성군	감염병의 ㅇ	ll방 및 관i	믜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	.례 … 60
고성군	조례	제2862호	고성군	당항포관광	지 관리 및	운영 조	:례	••••••	63
고성군	조례	제2863호	고성군 :	기업 및 투	자유치 등여	게 관한 2	조례 일부	-개정조례	••••• 73
고성군	조례	제2864호	고성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리	^녧 전부개	정조례 ·	······ 84
고성군	조례	제2865호	고성군 >	자동차대여	사업의 등	록기준에	관한 조현	례	94
회									
람									

발행: 고성군, 편집: 인구청년추진단(670-2642, 행정 2642)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엔

2023년 12월 14일

고성군 조례 제2850호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선서) ①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 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

- 립이나 사업 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 경계 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 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무원증) 공무원의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휴가 등

-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4과 같다.
- 제12조(시간외근무 연가전환)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 제1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②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승인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출석수업 기간이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줄 수 있다.

- ④ 의장은 장기재직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다음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 1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 2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 3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 4 .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 ⑤ 공무원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군 입영이 확정되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2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⑥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의회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고성군의회의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 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 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의회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별표 3]

공직자의 행동률(제5조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 한다. ◎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한다.
-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책을 읽고 인격 도야에 힘쓴다.
- ◎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하다.

대내관계

- ◎ 시간을 엄수한다.
-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 근검절약한다.

-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 직장 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 남의 인격을 존중한다.

■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별표 4]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제11조 관련)

- 1.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 2.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본인	5					
결 혼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10					
출 산	배우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입양	본인	20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투	- - - - - - - - - - - - - - - - - - -					
사 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1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보이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	개 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 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

2023년 12월 14일

고성군 조례 제2851호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별표 2] <개정 2023. 12. 14.>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6조제3항제1호 관련)

-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 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

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 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

2023년 12월 14일

고성군 조례 제2852호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출산장려 사항은 출산장려금 지급, 기타 예방접종지원, 한방첩약"을 "출산장려 사항은 출산장려금 지급, 한방첩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개량 융자금, 빈집 알선·수선·정비비, 지붕개량비, 공공시설이용"을 "공공시설이용"으로,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결혼축하금 지원은 19세부터 49세까지 부부(혼인신고일 기준) 중 한명이 주소지가 혼 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6개월 이내"를 "6개월 이내(다만, 전입세대 전입축하금 지원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입축하금 지원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개정규정에 따른 전입세대 전입축하금 지원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입세대 중에 전입축하금 신청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고성군에 두고 있는 고성군민에 한한다.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별표] <개정 2023.12.14.>

시책명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 원 내 용	비고
	결혼축하금 지급	조례 제3조제1항제7호 대상자에게 지원(단, 생애 1회 한정)	○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급 (부부 중 한명에게 2년간 현금 3회 분할 지급) → 분 1회 2회 3회 금액 50만원 50만원 100만원 시기 신청일 첫 첫 지급월 로부터 익월 로부터 2년 뒤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대상자가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 일) 기준 부모에게 지원	○ 첫째아이 100만원 지급 ○ 둘째아이 200만원 지급 ○ 셋째아이 이상 500만원 지급	
출 산 장 려	한방첩약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대상자 중 셋째아이 이상 출산모에게 지원. 단, 셋째아이 출생일 기 준 6개월 이내 신청자에 한함	○ 관내 한의원에서 한약 1제 지원(15일분: 20만원)	
	산후건강 관리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대상자 중 출산모에게 지원 (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 출산 시 매회 100만원 지급	
	신혼 (예비) 부부 건강검진 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대상자에 지원(단, 최초 1회 지원)	○ 무료 건강검진	
	다자녀 세대 체험놀이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 는 세대 지원	○ 관내 체험 시설에 다자녀 세대의 체험놀이 지원 (1명당 2만원 한도)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무료발급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 는 세대 지원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다자녀 세 대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세대 중 2021년 1월1일 이후 둘째아이 이상 출산한 세대에 지원		
	쓰레기 봉투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 는 세대 지원	○ 쓰레기봉투 연 20 ℓ 60매 지급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 는 세대 지원	고성공룡박물관, 당항포 관광지,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면제	
전 입 세 대	공공시설 이용우대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의 전입 세대에 지원	○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2개월 무료, 1년간 이용료 50% 할인 ○ 고성공룡박물관 또는 당항포 관광지 무료 입장권 2매	

시책명	지원항목	지원기준	지 원 내 용	비고
	전입축하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세대 지원 (단, 전입 최초 1회 한정)	- 전입세대원 1~3명(세대주를	
전 입	주민세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시 대	재산세 (주택분)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의 전입세대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교육세 등 포함) 연간 최대	
	기업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제6호의 전입 근로자에 지원. 전입일 기준으 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본인 이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근로자 (단, 최초 1회 한정)	○ 지원금액: 본인 30만원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12.14.>

			앙正	דיז	- 등 /	시 쐭	지원	! 신경	광 시	
			기	•	본	현		황		
	주	소	경남	고성근	근	읍·면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	일		스	l별 남·여
	전화변	변호	(자택)			(휴대전	선화)		
입금계좌	금융기	 관			계좌변	선호			예금	<u> </u>
		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	되는 지원	사항에만 기재
출산장려	□ 결혼□ 산호	론축히 후건깅	급		주십 , 산장려	금 [□ 한방 호(예비			<u>!</u> 비 지원
지 원	대상지 성	하녀 명			생년	월일			성별	남・여
	자 녀	수		자녀	중		신청인과의 관 2			
			관	계	성	명생	[년월일	성		전입일자
전입세대	가 현	조 · 황								
및 다자녀 세대지원	□ 쓰러□ 자동	베기종 동차번	량제 호판 <i>i</i>	봉투 [제작비	□ 전	박물관 입축하	금 □	주민서	네 • 재산.	료입장권 세(주택분)
) 통장시 형 시 L		무 수증 첨부	<u> </u>
	면 작성)		인구중	가시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	집·이용	동의서를 🦥	뒷면 서식의 작성해주십시오.
│ '고 │ 제출합		구증기	가 시찬	성에 관	한 조리	ᅨ」제4	조제1형	날에 따	라 지원	신청서를
고성군=	수 귀찮	5ŀ		년	. 원	! 일 신청 세대	인		•	또는 인) 또는 인)
	기재사항	이 사		상임을 년	확인 월	ያ .	!	증가 서	시책에 곤	·한 조례」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12.14.>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관리대장

연			신	청인	인적시	항		신청	사항	읍면 자	응면 결정사항 자			
번	신청일	주 소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연락처	계 좌 번 호	분야	항목	읍면 장 검 토 의 견	일자	지원 여부	왕 내 용	일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군수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
는 인구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른 법령	
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	
고 있는 금액이나 물품은 제외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규	
모를 조정할 수 있다.	
1. 출산장려 사항은 <u>출산장려금</u>	1 <u>출산장려금</u>
지급, 기타 예방접종 지원, 한	<u>지급, 한방첩약</u>
<u>방첩약</u> 지원으로 하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자녀(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가 6개	
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	
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출산장려금	
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한방첩	
약 지원은 셋째아이 이상 출	
산모에게 지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전입세대에게는 <u>주택개량 융</u>	5 <u>공공시설이용</u>

자금, 빈집 알선·수선·정비 비, 지붕개량비, 공공시설이용 우대, 전입축하금, 재산세(주 택분)·주민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6. (생략)

<신 설>

7. (생략)

② (생략)

-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인구 시책 지원을 위한 신청 및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인구시책과 관련한 전입신고 및 출생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인구시책과 관련한 지원대상자일 경우 지원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인구시책과 관련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발생일로부터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	$\overline{}$	_	$\overline{}$	_	_	_	_	_	_	_	_	_	$\overline{}$	$\overline{}$	$\overline{}$	_	_	-	_
_	_	_	_																			
_		_	_	_																		
					•																	

- 6. (현행과 같음)
- 7. 결혼축하금 지원은 19세부터 49세까지 부부(혼인신고일 기준) 중 한명이 주소지가 혼인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 <u>8</u>. (현행 제7호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세4조(지원신청	및	절차)	1 -	 _
				 _
1				 _
				 _
	- — — -			 _

<u>6개월 이내</u> 에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인구증가시책 지원신
청서 또는 출산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자동차번호판 제작
비는 군에 직접 신청서를 제
출할 수 있다. <

2. ~ 4. (생 략)

② (생 략)

6개월 이내(다만, 전입세대 전
입축하금 지원은 제외한다)

- 2. ~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엔

2023년 12월 14일

고성군 조례 제2853호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반설치)"를 "(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하부조직으로 "반""을 "하부조직으로 반"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반의 설치기준)"을 "(반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반은 2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의 수행과 주민 간의 지역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반명칭 및 관할구역)"을 "(반 명칭 및 관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반의"를 "반"으로, "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군수가 확정 공고한다"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정 공고하며, 별표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5일이내 도지사"를 "5일 이내 경상남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명예반장"을 "명예반장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으로, "및 보수등에"를 "등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반상회)"를 "(반상회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반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고성군 반 설치 조례 [별표]

반 명칭 및 관할구역(제4조 관련)

읍면별	법정리별	행정리별	반수	반명	구역	비고
총계			630			
고성읍			156			
		서내	7	1반~7반	일원	
	성내리	남내	6	1반~6반	1/	
		동내	5	1반~5반	"	
	2] O] =]	서외1	10	1반~10반	"	
	서외리	서외2	5	1반~5반	"	
		수외	6	1반~6반	"	
		남외	6	1반~6반	"	
	수남리	구암	2	1반~2반	"	
		남포	4	1반~4반	"	
		코아루	0	_	1/	
		동외	8	1반~8반	"	
		남산1	5	1반~5반	"	
	동외리	남산2	6	1반~6반	"	
		정동1	6	1반~6반	1/	
		정동2	2	1반~2반	1/	
	소귀 -1	송학	8	1반~8반	1/	
고성읍	송학리	무학	8	1반~8반	"	
	-1 01 -1	기월	4	1반~4반	1/	
	기월리	신기	2	1반~2반	1/	
	- 11-1	교동	4	1반~4반	1/	
	교사리	사동	2	1반~2반	1/	
	무량리	무량	2	1반~2반	1/	
	rl 11-1	양덕	1	1반	1/	
	덕선리	선동	2	1반~2반	1/	
	નો જો નો	대평	2	1반~2반	"	
	대평리	율촌	1	1반	"	
		내우산	2	1반~2반	1/	
	우산리	외우산	4	1반~4반	"	
		상촌	2	1반~2반	"	
		죽동	4	1반~4반	"	
	죽계리	장계	4	1반~4반	"	
		평계	1	1반	1/	
	율대리	율대	4	1반~4반	1/	

읍면별	법정리별	행정리별	반수	반명	구역	비고
		매수	3	1반~3반	일원	
	월평리	홍류	3	1반~3반	1/	
		거운	1	1반	1/	
	x1 01 71	신부	4	1반~4반	11	
고성읍	신월리	곡용	2	1반~2반	1/	
	ما دا عا	면전	3	1반~3반	1/	
	이당리	이곡	2	1반~2반	"	
	-1) T -1	대안	1	1반	"	
	대독리	독실	2	1반~2반	1/	
삼산면			35			
	병산리	병산	3	1반~3반	일원	
		장지	3	1반~3반	1/	
		두모	2	1반~2반	1/	
	두포리	포교	2	1반~2반	"	
		와도	0		"	
			2	1반~2반	"	
	미룡리	대포	2	1반~2반	1/	
삼산면		용호	5	1반~5반	1/	
		미동	2	1반~2반	<i>"</i>	
		상촌	3	1반~3반	<i>'</i>	
	삼봉리	해명	2	1반~2반	<i>'</i>	
		중촌	2	1반~2반	<i>'</i>	
	장치리	장백	2	1반~2반	<i>"</i>	
	판곡리	판곡	5	1반~5반	<i>'</i>	
하일면	279	7.7	37	1000		
의 근 단		임포	3	1반~3반	 일원	
		도동	1	1반 1반	 	
	학림리		2	1반~2반		
		- ^위 등 금단	3	1반~3반		
	스아리	수양	4			
취.이 rd	수양리		3	1반~4반	<i>'</i>	
하일면	용태리	용태		1반~3반	<i>'</i>	
		가룡	1	1번	<i>"</i>	
	ようしつ	송천1	2	1반~2반	<i>'</i>	
	송천리	사란	1	1번	<i>"</i>	
	A 33 =3	송천2	2	1반~2반	4	
	오방리	오방	4	1반~4반	"	

읍면별	법정리별	행정리별	반수	반명	구역	비고
		춘암	3	1반~3반	일원	
하일면	춘암리	용암포	2	1반~2반	1/	
아들면		맥전포	1	1반	1/	
	동화리	동화	5	1반~5반	"	
하이면			35			
		두수	2	1반~2반	일원	
	더중기	부평	1	1반	"	
	덕호리	신덕	4	1반~4반	1/	
		군호	3	1반~3반	"	
	더 머 기	공룡	1	1반	1/	
	덕명리	덕명	4	1반~4반	1/	
		월흥	4	1반~4반	1/	
	이중키	입암	1	1반	1/	
	월흥리	신흥	1	1반	1/	
하이면		정곡	1	1반	1/	
	사곡리	사곡	2	1반~2반	"	
	석지리	남산	1	1반	1/	
		음촌	1	1반	1/	
		양촌	2	1반~2반	"	
		신촌	1	1반	"	
	와룡리	와룡	2	1반~2반	1/	
	봉현리	봉현	3	1반~3반	1/	
	H Olal	외원	1	1반	"	
	봉원리	내원	0	-	1/	
상리면			28			
		척정	3	1반~3반	일원	
	척번정리	조동	1	1반	1/	
		평촌	1	1반	1/	
	- H -1	고봉	2	1반~2반	1/	
	고봉리	비곡	1	1반	"	
)] =] []	신촌리	신촌	3	1반~3반	"	
상리면		오산	2	1반~2반	"	
	오산리	중촌	1	1반	"	
		가동	1	1반	"	
	동산리	동산	2	1반~2반	"	
	ות בו ⇒ו	망림	1	1반	"	
	망림리	구미	2	1반~2반	"	

읍면별	법정리별	행정리별	반수	반명	구역	비고
	무선리	무선	1	1반	일원	
	十七日	선동	2	1반~2반	"	
상리면	자은리	자은	1	1반	1/	
	비교기	부포	2	1반~2반	"	
	부포리	내부포	2	1반~2반	1/	
대가면			40			
		화암	2	1반~2반	일원	
	척정리	척곡	2	1반~2반	1/	
		관동	3	1반~3반	"	
		월촌	1	1반	"	
	7 2] 7]	세동	2	1반~2반	"	
	금산리	신화	1	1반	"	
		가동	1	1반	"	
	암전리	암전	4	1반~4반	"	
	٥ ə ə ə l	유흥	2	1반~2반	"	
대가면	유흥리	삼계	2	1반~2반	"	
	양화리	양화	2	1반~2반	"	
	연지리	지동	3	1반~3반	"	
		평동	2	1반~2반	"	
	3 11 -1	송계	3	1반~3반	"	
	송계리	장전	2	1반~2반	"	
		외갈	1	1반	"	
	갈천리	내갈	2	1반~2반	"	
		종생	2	1반~2반	"	
	신전리	신전	3	1반~3반	"	
영현면			22			
	-) -) -)	침점1	2	1반~2반	일원	
	침점리	침점2	1	1반	"	
	추계리	추계	1	1반	"	
		봉발1	1	1반	"	
	봉발리	봉발2	1	1반	"	
영현면		금능	1	1반	"	
		대촌	2	1반~2반	"	
	대법리	법촌	2	1반~2반	"	
	W 22 - 3	영부	2	1반~2반	"	
	영부리	영동	1	1반	"	
	봉림리	봉림	2	1반~2반	"	

읍면별	법정리별	행정리별	반수	반명	구역	비고
		평촌	1	1반	일원	
	신분리	매촌	1	1반	11	
영현면		신촌	1	1반	1/	
	어치긔	연화1	2	1반~2반	11	
	연화리	연화2	1	1반	11	
영오면			28			
	(겨 리 크)	옥동	1	1반	일원	
	영대리	영대	4	1반~4반	1/	
	오서리	오서	4	1반~4반	1/	
	오동리	오동	3	1반~3반	11	
		신흥	1	1반	11	
	영산리	성산	2	1반~2반	11	
		낙안	1	1반	1/	
영오면	거ㅋㅋ	생곡	1	1반	1/	
	성곡리	금산	1	1반	1/	
		범계	1	1반	1/	
	ما جا جا	연촌	1	1반	1/	
	연당리	본양	1	1반	1/	
		악양	1	1반	1/	
		양기	3	1반~3반	1/	
	양산리	양월	3	1반~3반	1/	
개천면			20			
	청권리	청동	1	1반	일원	
	청광리	청남	1	1반	1/	
	나선리	나동	1	1반	1/	
	əl əl əl	가천	2	1반~2반	11	
	가천리	차치	1	1반	11	
	봉치리	봉치	2	1반~2반	11	
	0.01.71	용안	2	1반~2반	1/	
	용안리	용궁	0	_	11	
개천리	Hadal	북평	1	1반	1/	
	북평리	원동	0	_	1/	
	-111-1	상명	1	1반	1/	
	명성리	하명	2	1반~2반	1/	
	*JJ >JJ	덕성	1	1반	"	
	예성리	구례	1	1반	1/	
		좌연	2	1반~2반	1/	
	좌연리	좌이	1	1반	"	
	' - '	월곡	1	1반	1/	

읍면별	법정리별	행정리별	반수	반명	구역	비고
구만면			21			
	중미미	낙동	3	1반~3반	일원	
	효락리	효대	1	1반	"	
	주평리	주평	2	1반~2반	"	
		신계	1	1반	"	
	최리기	화촌	1	1반	"	
	화림리	당산	2	1반~2반	1/	
구만면		선동	1	1반	1/	
一十七七	저연리	연동	2	1반~2반	1/	
	시한다	저동	1	1반	1/	
	용와리	와룡	2	1반~2반	1/	
	중되니	용당	1	1반	1/	
		광암	2	1반~2반	1/	
	광덕리	중암	1	1반	"	
		덕암	1	1반	"	
회화면			52			
		관인	6	1반~6반	일원	
	배둔리	가례	5	1반~5반	"	
	메닌 너	양지	5	1반~5반	"	
		안의	5	1반~5반	"	
	당항리	당항	4	1반~4반	"	
		자소	5	1반~5반	"	
	봉동리	금봉촌	2	1반~2반	"	
회화면		동촌	3	1반~3반	"	
거되고		석전	1	1반	"	
	어신리	산북	3	1반~3반	"	
		어선	3	1반~3반	"	
		월계	4	1반~4반	"	
	삼덕리	남진	1	1반	"	
	079	신천	2	1반~2반	"	
		치명	1	1반	"	
	녹명리	녹명	2	1반~2반	"	
마암면			41			
	두호리	두호	4	1반~4반	일원	
	삼락리	곤기	3	1반~3반	"	
마암면	<u> </u>	평부	4	1반~4반	"	
100		보대	2	1반~2반	"	
	보전리	전포	2	1반~2반	"	
		동정	2	1반~2반	"	

읍면별	법정리별	행정리별	반수	반명	구역	비고
		원진	2	1반~2반	일원	
	화산리	법진	2	1반~2반	"	
		화산	4	1반~4반	"	
		명송	1	1반	11	
	L 2] 2]	도전	2	1반~2반	"	
마암면	도전리	용전	1	1반	11	
		초선	2	1반~2반	11	
	장산리	장산	3	1반~3반	11	
	성전리	성전	2	1반~2반	"	
	신리	신리	2	1반~2반	"	
	석마리	석마	3	1반~3반	"	
동해면			52			
	7] 7] 7]	용흥	2	1반~2반	일원	
	장기리	장기	3	1반~3반	1/	
		검포	3	1반~3반	1/	
	양촌리	덕곡	2	1반~2반	"	
		법동	3	1반~3반	4	
	الد الدالم	대천	2	1반~2반	4	
	외산리	좌부천	2	1반~2반	4	
	-11 21 -1	내신	2	1반~2반	4	
	내산리	전도	2	1반~2반	"	
	0 7 7	매정	3	1반~3반	"	
T -11 -13	용정리	가룡	3	1반~3반	4	
동해면		우두포	1	1반	4	
	בן בן בן	상장	3	1반~3반	4	
	장좌리	하장	2	1반~2반	4	
		구학포	2	1반~2반	"	
		장항	2	1반~2반	"	
	봉암리	입암	3	1반~3반	"	
		동림	2	1반~2반	"	
	A) = .)	정남	2	1반~2반	"	
	외곡리	정북	2	1반~2반	"	
	- 11 = 1	남촌	3	1반~3반	"	
	내곡리	북촌	3	1반~3반	"	

읍면별	법정리별	행정리별	반수	반명	구역	비고
거류면			63			
		당동	4	1반~4반	일원	
	당동리	신당	4	1반~4반	"	
		봉곡	3	1반~3반	"	
		용동	3	1반~3반	"	
	신용리	마동	4	1반~4반	"	
	신풍디	상원	2	1반~2반	"	
		하원	3	1반~3반	"	
	화당리	화당	2	1반~2반	1/	
	거산리	거산	3	1반~3반	1/	
	가려리	덕촌	3	1반~3반	"	
거류면	/ / 더디	가동	3	1반~3반	"	
/1m也		송정	2	1반~2반	1/	
	송산리	구현	2	1반~2반	"	
		도산촌	2	1반~2반	"	
		월치	3	1반~3반	1/	
	은월리	정촌	2	1반~2반	"	
		신은	3	1반~3반	"	
	용산리	용산	6	1반~6반	1/	
		봉림	3	1반~3반	1/	
	감서리	감동	2	1반~2반	"	
	쉽지되 	용운	2	1반~2반	1/	
		산성	2	1반~2반	"	

신ㆍ구조문대비표

했 개 정 안 혅 제1조(목적) 이 조례는 _ 지방자 | 제1조(목적) ----- 「 지방자 치법」 제7조제6항-----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______ 제2조(반설치) 리의 하부조직으로 제2조(반 설치) --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ਸ਼੍ਰੇ}-----제3조(반의 설치기준) 반은 20내 제3조(반 설치기준) ① 반은 20세 지 30가구(도시지역은 15<u>내지 2</u> <u>대 이상 30세대 이하를 기준으</u> 5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하되 행 로 구성한다. 정침투의 편의와 취락형태에 의 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 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인 행정업무의 수행과 주민 간 의 지역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 하여 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반명칭 및 관할구역) ①반 제4조(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반 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리개발 ----- 읍·면장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의 ----- <u>고성군수(이하 "군</u>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 공고 수"라 한다)가 확정 공고하며, 하다.

별표와 같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공고 하였을 때에는 반조정 내용을 5 일이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다.

제5조(반장) ① (생 략)

과 선출방법, 임무 및 보수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 하다

책사항이나 군정사항중 대 주민 계도 또는 공지사항의 주지 및 "반"주민의 자치적 사항이나 주 민의 대행정여망사항의 논의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 <신 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2) 따라
<u></u>
일 이내 경상남도지사

제5조(반장) ① (현행과 같음) ②반장 및 명예반장의 자격요건 ②---- 명예반장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 등에 -----

제7조(반상회) ①정부와 도의 시 제7조(반상회 운영) ① 행정시책 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 항 전달,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 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반상회 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그 밖에 반상회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

2023년 12월 14일

고성군 조례 제2854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3] <개정 2023. 12. 14.>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 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49	365	20	142	28	194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17	360	20	116	27	194
4급	<u>5</u>	<u>4</u>		1		
5급	44	19	3	6	2	14
6급 이하	662	337	17	103	25	180
전문경력관	6			6		
별정직 계	1	1				
6급상당 이하	1	1				
연구직 계	5	3		1	1	
연구관	0					
연구사	5	3		1	1	
지도직 계	25			25		
지도관	1			1		
지도사	24			24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엔

2023년 12월 14일

고성군 조례 제2855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문화재, 관광개발 및 관광기반조성, 해양치유"를 "문화유산관리, 문화유산정책, 박물관 운영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관광정책, 생태관광, 관광개발 및 관광기반조성, 해양관광, 당항포관광지 등에 관한 관리·운영 사항"

제1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 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라목을 문화환경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한다.

- ② 고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 ③ 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 ④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를 "관광진흥과장"로 한다.

⑤ 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⑥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관광지사업소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별표 2] <개정 2023. 12. 14.>
- □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3조제2항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고성군 하이면 자란만로 618
상하수도사업소	고성군 고성읍 동해로 121

신 · 구조문대비표

햀 개 정 안 혅 제5조의2(문화환경국) ① 문화환 제5조의2(문화환경국) ① -----경국에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 ----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과, 환경과, 해양수산과, 녹지공 워과를 둔다. ② 문화화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② -----관장한다. 1. 문화예술 및 문화시설·산업, 1. -----, 문화재, 관광개발 및 관광기반 문화유산관리, 문화유산정책, 조성, 해양치유에 관한 사항 박물관 운영 등-----<u><신</u> 설> 2. 관광정책, 생태관광, 관광개발 및 관광기반조성, 해양관광, 당항포관광지 등에 관한 관리 <u>·운영_사항</u> 2. ~ 5. (생략)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 까지와 같음) 제15조(소관사무) 사업소 소장은 제15조(소관사무)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삭 제> 1. 관광지사업소 가. 관광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나. 엑스포주제관 및 엑스포 관련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엑스포 업무지원 에 관한 사항 2. • 3. (생략) 1. • 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

2023년 12월 14일

고성군 조례 제2856호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훈격려금"을 "보훈격려금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쓰레기 종량제봉투: 매월 60리터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상·하반기 연 2회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①	제5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	
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u>보훈격려금</u> (이	<u>보훈격려금 등</u>
하 "보훈명예수당 등"이라 한	
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 <신 설></u>	4. 쓰레기종량제봉투: 매월 60
	<u>리터</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방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방
법 등) ① ~ ④ (생 략)	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⑤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상ㆍ하
	반기 연 2회 지급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

2023년 12월 14일

고성군 조례 제2857호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명"을 "10명"으로, "호선 한다"를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지역아동센터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단체 대표가 추천한 사람

- 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
- 3.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 4.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의를 시작하고,"를 "개의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를 "위원장은 위원회"로 한다. 제12 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행 개 정 안 혅 제9조(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 제9조(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 성) 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 성) ① -----하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u>둔다</u>. -----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 <u>10명</u> -----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 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 한다. 선하다. ③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위원은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촉직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원은 지역아동센터 업무 부서장 하거나 위촉한다. 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 다.

- 1. 당연직 위원가. 교육청소년과장나.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의원 1명
- <u>2. 위촉직 위원</u>
 - 가.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학식을 갖춘 사람
 - 나.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과 시설의 대 표

- 1.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 런된 단체 대표가 추천한 사 람
- 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 영리 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

다. 지역아동정보센터의 시설 의 장

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의 보호자 대표

마. 교육청 관계자

<신 설>

<신 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 | <삭 제> 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⑤ (생략)

<신 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삭 제> 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개최 한다.
-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 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 을 받은 센터장

4.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 ⑤ (현행과 같음)
-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 산한다.

<삭 제>

<삭 제>

개최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회의를 시작</u> <u>하고</u>,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 ⑤ <u>위원회</u>의 심의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 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해임·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 한 때
 -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

 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u>개의하고</u>
⑤ 위원장은 위원회
<u><삭 제></u>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

2023년 12월 14일

고성군 조례 제2858호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7인"을 "9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인 이내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군수"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당연직: 상정 안건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 2. 위촉직
 - 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이 된다.
-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등)"을 "(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 중에서 호선된"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임자의 잔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으로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1. 지명의 제정 ·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정 안 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 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률」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 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지 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 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다. 제2조(구성) ① 고성군 지명위원 제2조(구성)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워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 99] -----다. <후단 신설> -. 이 경우 민간위원은 6인 이 내로 한다. ②-----고성군수(이하 "군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수"라 한다)-------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 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워 1. 당연직: 상정 안건 관련 공무워 2. 향토사학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3. 기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험이 풍부한 자

- 4) 삭 제
- ⑤ 간사는 지명위원회 업무담당 으로 한다.
- ⑥ 위원장이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 연구 · 심의하게 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 다.
- (생 략)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 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하다
- 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 기는 3년으로 한다.
 -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제5조-----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람

- ⑤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이 된 다.
-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 원회를 둘 수 있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등) ①・②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3)----------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③ ----- 전임자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 2. 관할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 3. <u>기타</u> 지명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① (생 략)

 <u><신 설></u>

① (생 략) <신 설>

제7조(구성) ① (생 략)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 으로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1.	ス	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곾	하	사항			

2

3. <u>그 밖에</u> -----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화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2	<u>저</u>]1	항	어	1	4	리	<u> </u>			_	 	-	_	 	
-						- —			- –	_		 -	_		 	-
		_				- —	_		_	_		 -	_	_	 	_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 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 명을 조사한다.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 는 이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이 나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 다.

제9조(회의록) 5. 기타 중요사항 <신 설>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 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

제9조(회의록)

다.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

2023년 12월 14일

고성군 조례 제2859호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고 성군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로 한다.

고성군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과 고성군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및 운영한다.

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명칭) 재단의 명칭은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종합계획 수립, 시설의 설치, 재원조달, 행사운영
- 2. 당항포관광지 수탁 운영
- 3.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추진
- 4. 지역축제, 문화예술행사(공연·전시 등을 포함한다)의 기획 및 운영
- 5.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과 관련된 협력 및 연계 · 교류에 관한 업무
- 6. 문화·관광시설의 운영 및 관리
- 7. 지역문화 및 관광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8.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 단체 등의 활성화 지원
- 9. 문화·관광 관련 공모사업 및 상품개발
- 10. 국가·경상남도 및 고성군이 위탁한 사업
- 11.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시설운영,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사업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검사 등) ① 군수는 재단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 파견) ①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

에 귀속된다.

제12조(입장료의 감경 등) 재단은 고성군민에게 경상남도고성공룡세계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 입장료를 예매가격에 준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13조(보상금 등) ① 재단은 엑스포 현장입장권을 구입한 자 및 군의 숙박업소를 이용한 자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입장료를 감경받은 군민은 제외한다.

- ② 재단은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기념품 또는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 기준 등 세부사항은 재단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4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이를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고성문화관광재단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이 포괄승계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자율방역단 운영ㆍ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

2023년 12월 14일

고성군 조례 제2860호

고성군 자율방역단 운영 ·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민의 건강한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고성군 자율방역단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고성군 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 1. 고성읍: 15개 단 이내
- 2. 고성읍을 제외한 면: 1개 단
- ② 자율방역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분하며, 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 ③ 단장은 자율방역단 업무를 총괄하며 자율방역단을 대표한다.

제3조(운영 등) ① 군수는 관내 취약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방역소독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②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한 경우에는 완료와 동시에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일지를 제출해야 한다.
- ③ 읍·면장은 방역활동이 종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율방역단 예산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군 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 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고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
- 2. 자율방역단의 방역 물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 3. 공중보건 관련 동향 파악 및 보고
- 4. 그 밖에 합동 방역 활동 등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5조(해임) 군수는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있다.

- 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2. 해당 읍면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 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6조(안전교육) 군수는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방역소독방법, 장비운영방법, 약품희석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 군수는 자율방역단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자율방역단원의 방역 활동에 따른 보상금
- 2. 상해보험가입비
- 3. 방역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소독약품 등

제8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자율방역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 2.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 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 4. 그 밖의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읍·면장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일지

일 시	참여인원	활동장소	활동내역

특이사항: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서 (읍면)

□ 추	진기	간:
-----	----	----

□ 참여인원: 명(연 명)

□ 활동횟수: 회

□ 주요 활동장소:

□ 주요 추진사항

□ 문제점 및 대책

O 문제점

O 대책

□ 수범사례

[별지 제3호서식]

자율방역단 예산 정산 내역서

단위: 원

읍면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내역	비고

※집행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증빙자료 첨부)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

2023년 12월 14일

고성군 조례 제2861호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2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1항 중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을 "제7조제1항 및 제3항"으로, "매년 수립"을 "수립·시행"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4호 중 "홍보"를 "홍보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역물 품 등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감염취약계층 보호) ① 군수는 법 제49조의2에서 정하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감염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u>제2조</u> (생 략)	<u>제3조</u> (현행 제2조와 같음)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u>「감염병의 예방 및</u>	① <u>법 제7조제1항 및 3항</u>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기본	
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u>매년 수립하</u>	<u>수립·시행하여야</u>
<u> 여야 한다</u> .	<u>한다</u>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제5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u>홍보</u>	4 <u>홍보를</u>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u>방역물품 등 사업수행을 위해</u>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 6. (생략)

8. • 9. (생략)

제5조 ~ 제8조 (생 략)

<신 설>

제9조 (생략)

5. · 6. (현행과 같음)

<u>7</u>. • <u>8</u>.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u>제6조</u> ~ <u>제9조</u> (현행 제5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제10조(감염취약계층 보호) ① 군수 는 법 제49조의2에서 정하는 감 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 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 계·협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감염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현행 제9조와 같음)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엔

2023년 12월 14일

고성군 조례 제2862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당항포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명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 2. 위치: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만로 1116 일원

제3조(개장 및 휴장) ① 고성군 당항포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는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 ② 관광지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1월 1일, 설 · 추석 당일
-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 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4조(이용시간 등) ① 관광지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2.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②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이용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그날 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고성군금고에 납입해야 하며, 다음 날이 토요일, 공휴일 및 휴장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한다. 다만,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등) ① 관광지 이용객 중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2와 같다.

- ② 주요 관광시설 또는 자치단체 간의 상호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반환 등) ① 납입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관리 · 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2.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배상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관람객 유치 활성화 지원 등)

- ① 관광지 운영 활성화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유료관람객 내국인 20명 이상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유치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람일시, 관람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람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보상금은 내국인의 경우 입장료의 20퍼센트, 외국인의 경우 입장료의 30퍼센트로 하고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보상금 지급은 지급신청서에 따라 계좌 입금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관광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체험 행사를 추진하고 행사 참가자에게 3만원 미만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 1. 도장 찍기 여행
 - 2. 보물찾기 체험
 - 3. 가상현실 증강 체험

제9조(행위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 2. 취사 또는 조리를 요하는 음식물과 술을 반입하거나 음식물을 먹는 사람(다만, 도시락류 등의 간단한 음식물을 먹는 행위와 오토캠핑장 에서의 취사는 제외)
- 3.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 5.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제5조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입장료(제5조제1항 관련)

(단위: 원)

7 H	어	른	청소년	ا ما عا ما
구 분	보통권	우대권	·군인	어린이
개 인	7,000	3,500	5,000	4,000
단체 (20인 이상)	6,000	3,000	4,000	3,000
고성군민 (국내 자매결연도시 주민 혜택 적용)	1,000	1,000	1,000	1,000
비고	19세~64세	65세 이상		

※ 비 고

- 1. 어 른: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군인 및 청소년 이외인 사람
- 2. 군 인: 하사 이하의 군인과 수경 이하의 의무경찰을 말한다.
- 3.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을 말한다.
- 4. 어린이: 3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5. 단 체: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시설사용료(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사용료(원)	비고		
	이륜차		1,000			
주차장	승용차 승합차 (15인승 이하)		3,000	•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50/100 경감		
	승합차 (16인승 이상)		4,000	• 무료: 군민, 제3주차장 이용객		
	화 물 차		4,000			
트램카	1회 이용권		2,000			
二	2회 이용권		3,000			
주제관	입체영상관		2,000	4D		
구세ゼ 	가상현실체험존		2,000	XR		
11 1.1	성수기		170,000	• 사용기준: 1실/4인(최대 6인)		
	선 비 곱미터) 수 기	주말	120,000	- 1인 추가 시마다 사용료 10,000원 추가		
(52.0제곱미터)		주중	100,000	• 성수기: 7.15.~8.24.		
돔형펜션	성수기		80,000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 - 주말: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26.0제곱미터)	비 수 기	주말	60,000	- 주중: 일~목요일		
		주중	50,000	• 사용료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포함		
오토캠핑장	S사이트	1구간	50,000	• 사용기준: 1구간/4인		
		1박 추가	30,000	- 1인 추가시마다 사용료 5,000원 추가 - 차량 1대 기준		
	그 외 사이트	1구간	45,000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10,000원 할인1박 추가 요금은 할인 없음		
		1박 추가	30,000	• 사용료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포함		

■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입장료 감면 기준(제6조제1항 관련)

- 1. 입장료 면제대상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학술조사단
 - 3세 미만의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 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

자 및 그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2. 입장료 일부 감경대상

고성군 외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입장 전날 또는 그날 관내에서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 이 용한 이용객. 다만, 고성공룡세계엑스포 행사 기간 중에는 적용하 지 않는다.

-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전체 입장료의 30퍼센트(4인 이내)
- 5만원 이상: 전체 입장료의 40퍼센트(4인 이내)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제6조제1항 관련)

- 1. 주차료의 100분의 50 감경 대상
 - 경형자동차(1천시시 이하)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로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표지가 부착되 고. 해당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자동차표 지가 부착 되고 해당 유공자가 탑승한 자동차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5 · 18민주유공 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소유자동차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 행한 자동차 표지(참전 고엽제. 5 · 18민주유공자자동차표지)가 부착되고 해당 상이자가 탑 승한 자동차
- 2. 오토캠핑장 10.000원 감경 대상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1박 추가 요금은 할인 없음

■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제7조제2항 관련)

유 형	반환 및 배상기준	비고
□ 관리·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5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0% 배상	
□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하지 않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단체관람객 유치 보상금 지급신청서(제8조제2항과 관련)

□ 보상금 신청자

여행사명 (단 체 명)		대 표 자	(남/여)
주 소			
거래은행		계좌번호	
연 락 처	전화번호 :	(FAX:	

□ 관람객 유치현황

관람일자	관람인원			성	성 별 인		솔 자	нэ	
	계	내국인	외국인	남	여	성	명	연 락 처	

□ 보상금 신청내역

구 분	인원(명)	입장료(원)	보상금지급액(원)	비고
계				
내 국 인				입장료의 20%이내
외 국 인				입장료의 30%이내

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단체관람객 유치 보상금 신청서 를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 입장료 영수증 1부.

년 월 일

신청인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

2023년 12월 14일

고성군 조례 제2863호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투자기업"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사업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 을 설치하는 기업

- 나. 증설기업: 군내에 기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 10.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며, 그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각 호 중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 1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 12. "투자유치촉진지역"이란 최근 3년간 기업 투자유치 체결실적 및 보조금 지원율 등이 저조한 지역을 말한다.
 - 1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2조제1호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투자유치촉진지역

제4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및 제24조"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신·증설 기업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00억원"을 "20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명주소법」제8조의2"를 "「도로명주소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서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 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중 "경우"를 "경우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임대산업단지"를 "임대료 지원 및 임대산업단지"로 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건설국장이 되며"를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위촉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으로, "담당주사"를 "담당자"로 한다.

- 1. 투자유치업무 부서장
- 2. 도시계획업무 부서장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조금"을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중 "사업이행기간"을 각각 "사후관리기간"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7조에 따른 투자촉진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업장 부지매입 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

제27조제2항 중 "보조금"을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투자기업"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건축물 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 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2. ~ 9. (생략) <신 설>

개 정 아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사업 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 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 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 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군내에 기존 사 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 치하는 기업

2. ~ 9. (현행과 같음)

10.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관광 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 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신 설>

<u><</u>신 설>

<신 설>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고성군수(이하"군수"라| 등) ① ------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 하며, 그 종류는 「관광진흥 법」제3조제1항 각 호 중 관 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 1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 화산업진흥 기본법 _ 제2조제 1호에 따른 문화산업과 「문 화산업진흥 기본법 | 제2조제 4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가 내 재된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 하는 서비스의 제작·유통·이 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 다.
- 12. "투자유치촉진지역"이란 최 근 3년간 기업 투자유치 체결 실적 및 보조금 지원율 등이 저조한 지역을 말한다.
- 13.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 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 | 제2조제1호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 부금을 말한다.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외 소재 사업장의 군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상남도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
게 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
의 고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u>의하여</u> 조성된 지방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u><신</u>설>

2. (생략)

②・③ (생략)

제4조(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 등 저에 대한 지원) <u>「국가균형발전</u>특별법」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기업, 군내로의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1
따라
<u>2. 투자유치촉진지역</u>
9 (원체 케이국이 가수)
<u>3</u> . (현행 제2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 등
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분권
<u>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u>
법 제14조 및 제24조
百 4 14 立
제5조의2(신・증설 기업지원) ①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 🛪 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 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제1항의 투자기업의 인근도 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2에 따라 기업명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신 설>

군수는 군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 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 특
별지원) ①	
<u>200억 원</u>	
<u>.</u>	
② (현행과 같음)	

----- 「도로명주소법」 제10조-----

제6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서 관광사업 및 <u>문화콘텐츠산업</u> 투 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보조금 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제8조(임대용지 공급) 군수는 전 제8조(임대용지 공급) ------략사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 에 사용하다.

- 1. (생략)
- 2. 임대산업단지 용지 매입
- 3. ~ 5. (생 략)
- ② (생 략)

(생 략)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 ③ -----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서 신 설>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 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 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경우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

제1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제19조(기금의 용도) ① -----

- 1. (현행과 같음)
- 2. 임대료 지원 및 임대산업단 ス] -----
- 3. ~ 5.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투자유치위원회) $(1) \cdot (2)$ 제20조(투자유치위원회) $(1) \cdot (2)$ (현행과 같음)

---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 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 <<u>신</u> 설> <<u>신</u> 설> 1. ~ 4. (생 략)

- ④・⑤ (생략)
- ⑥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 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 무 <u>담당과장</u>이 되고, 서기는 투 자유치업무 <u>담당주사</u>가 된다.
- ⑦·⑧ (생 략)

제2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 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 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 의・의결에는 제척된다.

-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아니한다.
- ③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여 구성하여야 한다.
1. 투자유치업무 부서장
2. 도시계획업무 부서장
$\underline{3}$. \sim $\underline{6}$. (현행 제 1 호부터 제 4 호
까지와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6
<u>담당</u>
<u>담당자</u>
⑦·⑧ (현행과 같음)
<삭 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3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기위하여 도비 등 자금이 필요할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 제26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 1.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u>사업이행기간</u>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 2. ~ 6. (생 략)
 -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행기

제23조(투자기업 유치o 조금 신청 등) ①	
업에 대한 보조금 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지원 등의 취소	그 및 환수
등) ①	
1	
사후관리기간	
<u>/ 1 </u>	
9 . C (처체되 가)) \
2. ~ 6. (현행과 같음	ī)
7	이 중 키 -1 -1
/	<u> </u> 아우관리기

간 동안 정산 시의 고용인원간 ------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8. · 9. (생 략)8. · 9.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제27조(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 저 예에서 정한 보조금 및 융자금 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u>다만</u>, <u>제7조에 따른 투자촉진기반시</u> 설 지원금을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② <u>보조금</u>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u>보조금</u>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없다. <<u>단서 신설></u>

8.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세27조(이중지원 금지) ①
<u>다만,</u>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제7조에 따른 투자촉진기반
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19조제1
항제3호의 사업장 부지매입
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
② 보조금 또는 융자금
<u>보조금 또는 융자금</u>
<u>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u>
는 제외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

2023년 12월 14일

고성군 조례 제2864호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2. 벽지 및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 3.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지원과장, 도시교통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1. 장애인 · 노인 · 여성 · 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2.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 3.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개최한다.
- 1. 정기회의: 연 1회
-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업무 담당이 된다.
 -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 3. 보행환경 실태
-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 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 8.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 9. 교통약자의 인구현황(성별, 연령별 포함) 및 이동 실태
-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
- ②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로 판정받은 사람 또는 전문의 진단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
 - 2.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9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본인 확인 서류
-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 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 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 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 나. 그 밖의 사람: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소견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③ 군수는 등록 신청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 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하여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①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등 지원 기간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 ②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2.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는 제9조에 따른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 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 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동지원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내·시외버스 및 택시 요금의 변경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 가. 관내요금: 고성군 내를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농어촌버스요금의 2 배
- 나. 관외요금: 고성군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 2.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관내 농어촌버스요금 이하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고성군 공보 및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성군 관내[다만, 병원목적에 한하여 관외(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이용이 가능하고 차량 대기시간은 최대 2시간이며 그 이상소요시 별도 접수하여 고성군 차량으로 복귀한다]
-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 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환승을 지원하 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

까지 운행

-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공보 및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 ③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 ④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 3. 특별교통수단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 4.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 5.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 6. 비영리법인 · 단체
- 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있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운영성과가 우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 ④ 수탁자는 공개모집하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 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8조(교육)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 2. 장애인의 인권
- 3. 교통약자서비스
- 4.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교육
-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개정 규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의 따른 등록·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별지	제1호서식
_	_ 0 :		-10 -1	\circ			

[앞쪽]

접수						결	접수지	나 (결재권	자)	(결지	내권자)
번호						재					
		특	별교통수	는단 등	이용다		등록 /	신청서			
※ 선택	사항에 v	<u>√</u> 표 하♪	세요								
	성	명	,	٨	생년월일			성별		(لا	計/여)
신 청 인	주	소		-				관계			
	전화번호					휴대	폰번호				
	성	명		٨	생년월일			성별		(남/여)	
이 용 대상자	주	소		'							
	전화	·번호				휴대	폰번호				
	교통약자 유형		□장애(장	애 를	1)	□65세 여	이상 고령자	-		
۸ - ا			□기타()					
# 형	일상생활상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휠 체 어		전동	수동	없음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차량 용자동차 본인 5		호자	없음
비취되지	거주형태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		생활 급여종류()	해당무
생활영태	가족(동거인) 수				명	보 3	조 인	있음		없음	
이 용 대상자 유형 생활형태	성 주 전화 교통약: 일상생 활기 가족(동	명 소 번호 자 유형 활상태 세 어 형태 통거인)	□기타(독립 전동	장 부분도움 수동	애 급 완전도움 없음 아파트	휴대:) 의시 장애 또는 승 국민기 보장	전번호 □65세 여 나소통 인차량 용자동차 초생활 유·무	기상 고령자 가능 본인 급여종류	보3	호자)	불가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 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이동지원센터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 \text{mm} \times 297 \text{mm}$

[뒤쪽]

신청서 작성 안내

-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 및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8조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본인 확인 서류
 -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
 - 나. 그 밖의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 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
-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
 - 나. 그 밖의 사람.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소견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 약 서

본인은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 수 신 : 귀하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특별교통 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승인/불승인)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신	신 성 명 생년월일													
청 인	주		소								대상자와 관계			
이 용	성		명				생	년	월일					
용 대 상 자	주		소											
	장	애			영구장	해			□ 일/	시적	장애			
	유	형		(장애	il il	<u>'</u>)	()
	차 유	량 형			휠체어	탑승설	비 장착	ラ	사 량		□ 일번	<u></u> 차	량	
	이 기	용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결 사	정 유												
						년	월		일					
고	고성군수(이동지원센터장) (직인)													

210mmimes 297mm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

2023년 12월 14일

고성군 조례 제2865호

고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고성군에 소재하고, 고성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